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4734
----------	-------

제안연월일 : 2025. 12. .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144호)	박대출의원	2024.10.31.	소위원회 직접회부(2024.11.28.),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조세 소위원회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원회 심사·의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842호)	정태호의원	2025. 7.3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25.11.1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조세 소위원회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원회 심사·의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651호)	정부	2025. 9. 3.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25.11.1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조세 소위원회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원회 심사·의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대로 위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안 제10조제2항)

일반우편 송달대상에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를 포함하도록 함.

나.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선(안 제47조의4제1항 및 제47조의5제1항)

1)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

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도록 함.

2)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 그 독촉에 드는 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도록 함.

다.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 확대(안 제59조의2제1항)

납세자가 국세 관련 처분 등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의 절차 외에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보완(안 제81조의19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1)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완기간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지기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하려는 사실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법률 제 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 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로서 그 고지금 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3.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4. 제22조제4항제2호의 국세에 대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제21조제2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나목과 다목”을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 · 제2호의2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징수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 납부기한(이하 “지정납부기한”이라 한다) 경과 후 매 1개월이 경과하는 때

라. 제47조의4제1항제3호 ·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제22조제4항제5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각각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제1호 중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을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7조의4제1항제2호 중 “이자상당가산액”을 “이자 상당 가산액”으로,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을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7조의4제1항제3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로,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100분의 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가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의2·제2호의2 및 제4호”로 한다.

4.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4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을 “제2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을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3.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제48조제2항제3호다목 중 “과세표준을”을 “그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한 과세표준을 제45조에 따라”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을 “수정하여 신고한”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과세표준신고를 한”을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으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을 “기한 후 신고를

한”으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심판청구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 신청인 및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으로,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관청을 말하며,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로 한다.

제81조의11제3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5항 및 제156조의6제5항, 「법인세법」 제98조의4제5항 및 제98조의6제5항”을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6항 및 제156조의6제6항, 「법인세법」 제98조의4제6항 및 제98조의6제6항”으로 한다.

제81조의19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후단 중 “20일”을 “20일(제2항 본문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 및 제4항 전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 후단에 따른 기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려는 사실과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납세자의 요청 내용의 보완, 제6항에 따른 결과 통지 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2항, 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47조의4 및 제4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47조의4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47조의5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생략)</p> <p>②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p>	<p>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로서 그 고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u>부고지서</u>
	<u>4. 제22조제4항제2호의 국세에</u> <u>대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u> <u>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u> <u>법정납부기한까지 제출하였으</u> <u>나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u> <u>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u> <u>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u> <u>서</u>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생 략)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다.	②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 에 따른 시기. 다만, <u>나목과 다</u> <u>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u> <u>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u> <u>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u> <u>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 로 한다.</u>	11. ----- -----. ----- <u>나목부터</u> <u>라목까지-----</u> ----- -----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u>다.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u> <u>른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고</u>	<u>다.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u> · 제2호의2에 따른 납부지

<p><u>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u></p>	<p><u>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징수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납부기한(이하 “지정납부기한”이라 한다) 경과 후 매 1개월이 경과하는 때</u></p>
<p><u><신 설></u></p> <p><u>라. · 마. (생 략)</u></p>	<p><u>라. 제47조의4제1항제3호 ·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u></p>
<p><u>③ (생 략)</u></p>	<p><u>마. · 바. (현행 라목 및 마목과 같음)</u></p>
<p><u>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 ③ (생 략)</u></p>	<p><u>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 ③ (현행과 같음)</u></p>
<p><u>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u></p>	<p><u>④----- ----- ----- ----- -----.</u></p>
<p><u>1. ~ 4. (생 략)</u></p>	<p><u>1. ~ 4. (현행과 같음)</u></p>

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 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
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a solid top line, a dashed midline, and a solid bottom line, repeated vertically across the page.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이자율

<신 설>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
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
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
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
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1의2.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이자 상당 가산액 납부일
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정하는 이자율

〈신 설〉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
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
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
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
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
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
(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 설〉

2의2.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초과환급받은 세액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100분의 3

4.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
른 독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생략)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
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
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
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
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
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이자율

〈설설〉

제2호의

1. (현행과 같음)

2. 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 까지의 기간

3.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p><u>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u></p> <p><u>세액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u></p> <p><u>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u></p> <p><u>과한 개월 수 × 금융회사 등</u></p> <p><u>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u></p> <p><u>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u></p> <p><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u></p>	
<p><u><신 설></u></p>	
<p>② · ③ (생 략)</p>	
<p>④ 제1항을 적용할 때 <u>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u>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 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p>	
<p>⑤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 ·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u>제1항제2호</u>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생 략)</p>	

라.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생 략)

제59조의2(국선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재결청(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라. -----

---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 기한 후 신고를 한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국선대리인) ① -----
----- 심판청구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
신청인 및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관청을 말하며, 제81조
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
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한다.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

— — —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 후단에 따른 기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려는 사실과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⑤ ----- 제3항 및 제4항 전
단에 -----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fiv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letter formation.

③ 납세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81조의 18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으로서 세무서 납세자 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 장의 결정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세자의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

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은 납세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전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생략)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 지역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납세자의 요청
내용의 보완, 제6항에 따른 결
과 통지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
에 관하여는 제2항, 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은 “국세청장”으로 본다.

8

제5항

⑨ (현행 제6항과 같음)

10) ----- 제5항 -----

-----.

<p>⑧ 제1항부터 <u>제7항</u>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⑪ ----- <u>제10항</u>----- ----- ----- ----- ----- -----.</p>
--	--